

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
설계용역 과업지시서

2020년 10월

무주군청 건설과

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

제1장 설계 개요

1. 과업명 :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

2. 과업목적

- 주차공간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5일장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반딧불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설시장·지역상권으로서의 기능 회복 도모
- ‘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’의 ‘수다길 보행·전망쉼터 데크 조성사업’이 예정된 남대천변 산책로와 연계한 공공휴게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산책거점 확보
- “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”과 “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”의 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의 여가활동의 향유기회 제공

3. 사업개요

1) 과업의 위치 :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30-2의 6필지

- 대지면적 : 총 4,564제곱미터
- 사업규모 : 연면적 4,500제곱미터 (기계·전기실 면적 별도)
- 지역지구 : 준공업지역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
- 건축용도
 - 근린생활시설(약 700㎡): 휴게편의시설, 주민공동이용시설, 공용공간 등
 - 운동시설(약 2,150㎡): 생활체육시설, 공용공간 등
 - 주차장(약 1,600㎡) : 주차대수 최소 126대 이상(대형버스 14대 포함)
- * 적용 용도의 적합성 및 면적은 설계자가 판단하여 변경 제시할 수 있음

2) 과업의 종류 : 기본 및 실시설계

3) 과업추진예산

- 추정공사비 : 12,666만원 예정 (부가세 포함)
 - * 건축, 기계, 토목, 전기, 소방, 통신, 조경, 구조, 조명, 인테리어(공용부) 등의 설계비와, 건축협의,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를 포함.
 - * 각종 인증 수수료 및 측량·지질조사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
 - * 각종 시설분담금(상하수도, 전기 등)은 시설공사비 내 포함
 - *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- 설계비 : 788백만원 예정 (부가세 포함)
 -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 후 차수계약을 별도로 함
 - * 구조, 조경, 기계설비, 토목 등 관련 설계분야의 설계 포함
 - * 전기·통신 등 분리발주 대상 분야의 설계비 포함
(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일괄계약)
 - * 각종 인증을 위한 자료 및 도서작성의 외주비 포함

4) 과업기간

-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8개월 (공휴일 포함)
- 각종 협의회, 심의 및 위원회 의견 반영 포함

4. 기본지침

- 본 과업지시서는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적용하며, 발주처, 통합디자인협의회 및 총괄디자이너, 지역주민 운영조직(무주 반딧불시장 상인회 및 무주군 배드민턴협회)과의 긴밀한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.
- 과업의 범위는 건축, 기계, 설비, 전기, 통신, 소방, 조경, 토목 및 상하수도, 철거 등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.
- 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,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, 설계되어야 한다.
- 본 과업의 범위에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도서, 공사시방서, 내역서(품셈 및 일위대가 포함)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인허가, 공사수행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을 포함한다.
- 해당 부지 및 기존 건물들에 대한 현황, 주변 건축물 및 필지들과의 관계, 대지의 형태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이용 및 용도지역의 특성 반영에 따른 민원발생 등 대지의 여건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방향을 결정하고, 건물의 형태와 내외부 마감재료, 마감방법, 설비계획 등의 대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미관성, 기능성, 친환경적 요소의 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, 감독관 및 통합디자인협의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.

5. 과업범위

- 설계범위 : 해당 사업 조성공사와 관련한 건축, 기계, 전기, 통신, 소방, 구조, 인테리어(공용부), 조경, 토목 등 제반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,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

작성 용역

○ 용역범위

- 대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
- 계획설계 (지역주민 운영조직과의 협의 포함)
-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
- 관련 인증 진행 총괄
- 공정표 작성
- 통합디자인협의회 보고 및 참석
- 건축 협의 및 각종 심의(인허가, 관련 심의 등)
- 조감도(투시도) 작성 (실사 렌더링되지 않은, 건축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조감도를 말한다. 발주처의 실사 렌더링 조감도 요청이 있을 시 이는 별도의 용역비에 의한다.)
-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도서 작성
- 각종 인허가, 심의,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
-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수행한다.

○ 설계자 참여 설계의도구현

- 건축시공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공사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참여는 월 1회 및 필요시 수시 참여
(일정은 조종될 수 있음)
- 필요할 경우 통합디자인협의회 참석, 자문참여
- 참여수당 기준
 - * 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참여 수당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특급 기준 노임단가 적용
 - * 통합디자인협의회 참석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자문비 지급
 - * 상기 기준에 따라 비용은 추후 참여시 별도 지급

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

1. 법규준수의 책임

-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공사업법, 전기사업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전기공사업법, 소방관련법,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,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주차장법, 지적법, 신·재생에너지이용 보급촉진법,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사업추진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설계자문, 디자인자문이 완료되고 발주기관의 검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.
-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
2. 업무수행

-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, 심의,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,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3.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

-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(배상)한다.
-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(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, 건축협의 불가, 구조적인 모순, 특정업체 제품명기 등)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및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,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 적극적으로 협조(방문 및 답변서 제출 등)하여야 한다.
- 다음 경우에는 과업을 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(계약기간의 연장), 제24조(불가항력), 제32조(기술용역의 일시정지), 제33조(계약상대의 기술용역정지 등), 발주처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

4.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

-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 및 대지의 현황 등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검토하여,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.
-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(관계기술자와의 협력)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(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)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5.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

1)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문객 확대를 위한 주차장 확보
- 주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보
- 남대천변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경관계획
- 노인 및 장애인 등 누구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하며, B.F.인증을 고려하여 설계
-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
-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

2) 보안유지

-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35조(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)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
-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(업무상의 성실의무 등)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

제3장 설계 진행사항

1. 설계도서 작성

-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,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 본 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, 공사규모,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,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

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
2. 설계진행시 제출서류

1) 착수시

- 착수계
- 과업수행계획서 (각 관련주체들(건축, 기계, 조경, 토목, 소방, 전기, 통신 등)간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),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구성이 되도록 작성)
- 책임기술자 선임계
- 설계용역 참여기술자(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)
- 설계용역수행 조직표
- 각 공종(건축, 토목, 조경, 기계, 전기, 통신, 소방 등)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, 구체적 업무내용,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, 기술경력증명서, 이력서 등
- 설계용역 예정공정표(계획,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)
-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
-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) 기본설계(안) 제출시

- 기본설계 도서
-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각종 인·허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

4) 실시설계 제출시

- 실시설계 도서
- 종합보고서(설계보고서) _착수 이후 설계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
- 각종 협의 완료(협의)서 등
- 공사예정공정표(공기산출 근거 포함)
- 설계경제성 검토(VE)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자료 및 도서(설계내역 확정시 해당절차 지원 필요)
-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3. 업무보고 및 회의

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) 업무보고

- 주요보고회

- 착수보고회 : 착수 후 4주 내외 (공모내용 보완 반영)
- 중간보고회 : 12주 내외 (보고방식,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율)
- 최종보고회 : 용역 준공 전 3주 내외 (최종설계안)
- 수시보고
 - 통합디자인협의회 개최시 설계진행 관련 업무보고 및 참석
 -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마다 제출하고, 발주기관 요청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4. 보안성 검토

- 설계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.
-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(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 각서 첨부)
 -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, 폐기물은 소각 처리한다.
 -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.

제4장 설계 일반지침

1. 설계 일반지침

- 일반사항
 -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.
 -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 - 합리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한다.
 - 방수, 방습, 단열,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 - 장애의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하며, 공간구성은 개방성 있게 한다.
 - 장애인을 위하여 ‘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규모 및 구조로 설계한다.
 -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.
 -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

친환경 내장재 사용시 공법의 선택과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가능성과 공간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.

- 지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.
- 기타 세부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.

○ 배치계획

- 건축물의 대지조건(대지규모, 형태 등) 및 주변 환경(인접도로, 인접건물, 방향 등)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율도를 높이도록 하며, 건물의 배치, 매스,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다.
- 건물의 배치는 주변도로, 인근 공공건축물, 주변 건축물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에너지 효율을 이용하여 계획한다.
- 건축물의 내·외부 공간, 시설물과 외부공간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도록 계획한다.
- 보행자와 차량동선 계획에 있어 동선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계획하여야 한다.

○ 평면계획

-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.
- 아래의 세부시설 기준은 참고기준으로, 설계자의 의도와 담당부서, 자문회의 및 주민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용도	세부시설	면적
제1종근린생활시설	대기·휴게공간, 수유실, 외부 휴게쉼터 지역동호회 활동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인카페 등의 주민공동운영시설 (위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시 가능)	700m ²
운동시설	다목적 체육관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, 창고 등 생활체육시설	2,150m ²
<부설주차장>	노외주차장, 필로티주차장, 데크형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설계자의 배치 및 동선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제시	1,650m ²

-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에서 조정이 가능하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각 시설별 운영주체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원만한 이용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 및 동선계획을 한다.
-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접근성, 독립성,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

한다. (각각의 실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호실별 면적표를 작성 제출)

- 출입구, 복도, 문, 화장실, 엘리베이터 등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하고, 접근로 계획시에는 단차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각종 기계장치 및 설비장비 등의 기계실은 필요면적을 감안하여 계획하며,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.
- 화재·비상시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등 비상재해 대피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.
-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.

○ 외부공간 계획

- 외부공간 계획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(Barrier Free) 및 유니버설 디자인(Universal Design)을 실현한다.
- 유아, 임산부,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나 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.
-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.

○ 입면계획

-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주위와의 조화, 공법의 합리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지역사회 컨텍스트 안에 위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외압적이거나, 과도한 상징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밝고 친근하며,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.
- 건축물의 형태, 재료,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되도록 계획한다.
-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적용한다.
- 창호설계는 냉난방 미가동시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공기순환기 외부 환기캡 및 화장실 환기캡, 배수설비 등에 대한 마감이 입면도에 표현되어야 한다.
-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며, 에너지 효율 및 안전의 효과도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.
-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.

- 주요자재 사용계획
 -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.
 -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(골재 등)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.

2. 설계도서의 분리작성

- 건축, 토목, 조경, 기계설비, 전기,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. (도면, 내역서, 일위대가표, 수량산출기초 등)

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

1. 기본설계(안)

1) 일반사항

- 설계자가 제출한 보완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검토의견을 통보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발주처가 보완조건으로 계획(안)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.

2. 실시설계

1) 일반사항

-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본 설계지침 및 수정,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.
-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,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.
-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- 전기, 기계설비,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.
-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(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)

제6장 설계 성과품의 제출

1. 제출서류

구분	규격	제출부수	비고
종합보고서(설계설명서)	A4	3부	
설계내역서 및 구조계산서	A4	3부	
단가 및 수량산출서	A4	3부	
시방서(일반 및 특기시방서)	A4	3부	
공사예정 공정표	A4	3부	
설계도면	A3 반접이	3부	
설계도면	A3	2부	
기타 (각종 검토보고서)	A4	3부	
제출물 디지털 파일	USB	1set	

2. 설계 유의사항

1) 설계용역

- 설계협의 및 각종 설계심의에 필요한 도서 및 제반자료는 용역자의 부담으로 제작 납품한다.
- 설계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설계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과업지시서상 이의가 있을 시는 용역계약전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. 단, 용역 계약 이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, 발주처의 지시 및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2) 납품방법

- 납품은 기본설계납품, 실시설계납품, 최종보고납품으로 구분한다.
- 납품의 범위는 설계완료에서부터 설계심사, 건축협의 등 보완 완료시까지로 한다.

3) 아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-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
-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이 중단될 때
 - * 이 경우 용역은 타절준공하고,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.
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